

의과대학평가 기준 ; 표준화

- 표준화의 현황 및 전망 -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최삼섭

1. 서론

의과대학평가는 의학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의 한 부분으로서 설정된 목표와 계획의 달성과 실현의 정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차기 목표수립과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의학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순환적 과정의 부분이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의과대학은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의과대학교육에 있어서 명료한 목표설정과 합리적인 계획수립, 이에 따른 실천 및 평가는 의과대학발전의 필수 요소이며, 의과대학(機關)에 속하는 개별적인 교육단위(각학과 등)의 자체적 노력에 의하여 계속되어야 할 의학교육활동의 한 부분들이다.

우리나라 의과대학에 개설될 수 있는 교육단위로서의 학과는 의예과·의학과·간호학과 등이 있어 대학에 따라 학과 개설사항이 다양하다.

표 1. 우리나라 의과대학에 개설된 학과별 의과대학 수(1990)

대학 개설 학과		의과대학 수
의과대학	의예과·의학과·간호학과	7
	의예과·의학과· -	9
	- ·의학과·간호학과	7
	- ·의학과· -	8
계		31

따라서 의과대학에 따라서 평가의 대상(學科)과 내용이 다를 수 있을 것이나 여기에서는 의과대학을 의학과를 대표하는 개념, 즉 의과대학(의학과)의 견지에서 논술하기로 한다.

모든 학과는 대학교의 기본단위기관이고 교육과정개발, 교수연구의 산실이 된다. 학과는 행정적 학문적 기능 등을 함께 갖추고 있으며,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자율성을 추구하게 되는 바 여기에 책무성이 함께 수반되지 않고서는 효과적이고 능률적이 될 수 없게 되고 학과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아울러 교수·학습기능을 개선하고 교수와 학생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적이고 조직적인 기획과 평가를 통해 발전을 위한 노력과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의과대학평가기준 ; 표준화 현황

(1) 법적 근거가 있는 기준들(양적인 표준화 지향)

(1) 의과대학 교육기간 : 의과대학교육은 의예과 2년과 의학과 4년을 포함하여 6년으로 한다(교육법시행령 제115조).

2) 의사국가시험 과목 : ① 내과학, ② 외과학, ③ 소아과학, ④ 산부인과학, ⑤ 내과계 특과학(신경과학, 정신과학, 피부과학), ⑥ 외과계 특과학(비뇨기과학, 안과학, 이비인후과학), ⑦ 지원계 특과학(방사선과학, 임상병리과학, 마취과학), ⑧ 예방의학 및 ⑨ 보건의약관계법규 등 15개 과목으로 한다(의료법시행규칙 제8조).

(3) 교원배정기준 : 대학설치기준령 및 설치기준은 교육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대학의 교수와 시설, 설비에 관한 기본이 되는 기준을 규제하고 있다. 이 기준령과 기준 중 의과대학(의학과) 전임교원배정에 준용되는 조항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2).

의과대학 의학과 교원 및 조교인력배정 비교기준표

표 2. 의과대학(의학과 교원 배정기준(요약))

(1) 의과대학(의학과) 기본교원요원 : 9명
(2) 정원 160명을 초과하는 매10명 학생당 추가교원 : 1명
(3) 개설 교과목당 담당교원 : 2명 이상
(4) 교수 및 부교수 매1인당 조교 : 1명 이상
(5) 교수 및 부교수 대 조교수 및 전임강사 : 4 : 5
(6) 시간강사 : 전임교원 1/3 범위에서 시간강사 3명을 전임교원 1인과 대치 가능

표 A. 의과대학 의학과 교원 조교 인력배정 비교기준표
(대학설치기준령, 교원배정기준 준거, 24개 교과목 개설기준 산정)

구분	의학과교원배정기준(명)					의학과 조교 배정 기준(명)		
	교과분야별		합계	교원직급별		기초의학 교실조교	임상의학 교실조교	합계
	기초의학 담당교원	임상의학 담당교원		교수·부교수 인 원	조교수·전임 강사 인 원			
학년								
학생정원 (명)								
60	23	42	65	29	36	12	17	29
80	26	47	73	38	40	13	20	33
100	29	52	81	36	45	14	22	36
120	32	57	89	40	49	16	24	40
140	35	62	97	43	54	17	26	43
160	38	67	105	47	58	19	28	47
180	41	72	113	50	63	20	30	50
200	44	77	121	54	67	22	32	54

* 비교기준(比較基準) : 의학과, 학생정원별로 개설 학과목 24개 과목(기초분야 8, 임상분야 16)을 기준으로 하여 전임교원 및 조교 배정 최소한 기준수를 산정한 것임.

《자료원》 최삼섭 : 의과대학 교원현황 분석과 의학교육 개선에 관한 연구(1981).

표 B. 의과대학 의학과 교원 조교 인력배정 비교기준표
(대학설치기준령, 교원배정기준 준거, 30개 교과목 개설기준 산정)

구분	의학과교원배정기준(명)					의학과 조교 배정 기준(명)		
	교과분야별		합계	교원직급별		기초의학 교실조교	임상의학 교실조교	합계
	기초의학 담당교원	임상의학 담당교원		교수·부교수 인 원	조교수·전임 강사 인 원			
학년								
학생정원 (명)								
40	24	45	69	31	38	12	19	31
60	27	50	77	34	43	13	21	34
80	30	55	85	37	48	15	22	37
100	33	60	93	40	53	16	24	40
120	36	65	101	43	58	18	25	43
140	39	70	109	46	63	19	27	46
160	42	75	117	49	68	21	28	49
180	45	80	125	52	73	22	30	52
200	48	85	133	55	78	24	31	55

* 비교기준(比較基準) : 의학과 학생정원별로 개설 학과목 30개 과목(기초분야 10, 임상분야 20)을 기준으로 하여 전임교원 및 조교 배정 최소한 기준수를 산정한 것임.

《자료원》 최삼섭 : 의과대학 인력관리세미나,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1990).

(표 A 및 표 B는 항 3)에서 기술한 교원배정기준(대학설치령 준거)을 적용하여 의학과 의입학생 정원수별로 산출한 의과대학 의학과 교과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전임교원 배정인력을 교과분야별(기초의학과 임상의학 교과목), 교원직급별로 산정하고 교원 보조인력으로서의 법정 조교수를 산정한 것이다. 각 의과대학 교육책임자는 이 표에 산정된 교원인력을 기준하여 각 대학의 의학과 교원인력 평가 내지는 총원계획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위 “배정기준”표 산정에 있어서는 의과대학 의학과 학사과정 교육에 중점을 둔 것이므로 부속병원

수, 운용병상수, 일일진료 환자수 등 진료봉사기능과 대학원 학생 지도기능 수행에 필요한 인력은 별도로 반영되어야만 할 것이다.

(4) 의과대학(의학과) 교육시설 및 실험·실습시설·설비기준;(표3)

2) 의과대학 교육현황(보고서) 양적인 표준화 지향)

한국의과대학장 협의회(설립 1971년 : 의과대학교육협의회)에서 1978년 이래 매 2년마다 각 “의과대학별 교육현황”을 의학과중심의 교육통계자료로 집집간행하

표 3. 의과대학(의학과) 교육시설 및 설비기준(요약)

1. 교 사 :	대학 교사는 (1) 강의실, (2) 실험실습실, (3) 교수 연구실, (4) 사무실, (5) 도서관, (6) 강당, (7) 체육실, (8) 학생복지관, (9) 그 부대시설로 구분하고 있음.
2. 설 비 :	의학과 실험, 실습설비기준은 문교부 고시로 정하고 있다(참조 표 4).
3. 부속시설 :	부속병원(대학설치기준령 제10조 6항)
4. 도 서 관 :	(1) 열람실에는 정원 2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 (2) 학생 정원 1인당 30권 이상의 도서와 매년 학생 정원 1인당 3권 이상을 추가하는 도서, (3) 학과별로 15종 이상의 전문분야 정기간행물

표 4. 의학과 학사과정 실험·실습시설 설비기준(문교부 고시 제83-5호)

시	설	설	비
실험실습실	교 실	설비품목(종류)	품목수량(점)
해부학	1	8	35
병리학, 조직학	1	22	183
생리학, 약리학	1	39	159
미생물학, 기생충학	1	25	46
생화학·예방의학	1	26	96
계	5	120	509

표 5. 의과대학교육현황 수록항목(1990)

① 의과대학 교육목적 및 목표	⑧ 의과대학 시청각교육기기 보유·현황
② 의과대학 교육과정위원회	⑨ 대학내 의학관계 연구소 현황
③ 의과대학 학생현황(의예과 및 의학과)	⑩ 대학원 의학과 학생 현황
④ 의과대학 의학과 교원 및 조수 현황	⑪ 졸업후 의사연수교육 현황
⑤ 의과대학 의학과 교육과정 특성	⑫ 의과대학 부속병원 병상수 및 전공의사현황
⑥ 의과대학 개설학과목(의예과 및 의학과)	⑬ 의학대학 의학과 전임교원 현황(명단)
⑦ 의과대학 도서관 현황	

고 전국외과대학 의학과 교원에게 1부씩 배포함으로써 의과대학교육에 대한 간접적 평가효과를 누리고 의과교육에 관심 있는 교수들의 연구·분석자료로 활용하게 하고 있으나 아무런 법적구속력은 갖고 있지 않다.

“의과대학 교육현황” 보고서에 수록된 조사 항목은 1990년도판을 기준할 때 13개 대항목으로 구분되며 조사대상은 31개 의과대학(의학과)이다(표 5).

3) 학과평가내용과 평가준거(질적기관 발전지향)

우리나라 대학(교)에서 개설하고 있는 모든 학과에 대한 평가에 적용하기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개발 제시하고 있는 학과평가내용을 보면 평가영역을 ① 목표, ② 교육과정, ③ 학생, ④ 교수, ⑤ 시설·설비, ⑥ 경영·재정의 6개 대항목으로 분류하고 각 대항목을 다시 4~6개 정도의 소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각 소항목을 평가하기 위한 준거(Criteria) 4~6개 정도를 추출하고 있다.

또한 각 소항목 내용을 평가하기 위하여 준거를 기초로 한 평가기준과 평가지침(질문형식으로 됨)을 별도로 작성하고 있다.

이 소항목 평가기준과 평가지침은 각 학과의 자체평가연구나 협의회 학과평가위원회의 학과 현지방문평가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평가척도의 역할을 하게 된다(평가지침별 평가지표는 각 해당 학과 또는 학회에서 연구·개발되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음).

학과평가의 기준은 대학교육협의회의 학과평가위원회와 각(학과관련) 학회가 계속하여 공동으로 연구·발전시켜 나아가야 함을 전제로 하고 일차적으로 학과평가위원회(협의회)가 작성 제시한 학과평가내용과 평가준거는 다음(표 6)과 같다.

4) 대학(교)종합평가(질적인 기관 발전 지향)

대학(교)종합평가란 대학(교)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대학(교)의 계획·운영·성과 등의 제요소들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가치판단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교)종합평가의 기준은 대학(교)의 각 단위기관들의 계획·운영·성과 등의 제요소에 대한 사회적·공공적·교육적으로 적절하게 기대되는 목표나 성과의

수준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설립근거: 법률 제3727호, 1984. 4. 10)에서 개발하여 우리나라 전국대학(교)에서 적용하고 있는 대학(교)종합평가의 내용영역으로는 ① 대학목표, ② 교육과정, ③ 학생, ④ 교수, ⑤ 시설·설비, ⑥ 행·재정의 6개 대항목으로 분류하고, 각 대항목별로 2~5개의 중항목을 설정하고, 이를 다시 3~7개의 소항목으로 분류하여 평가기준(평가기준)을 설정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소항목 평가기준별로 질문형식으로 되어 있는 평가항목이 별도로 작성되어 있는데 이 평가항목은 대학(교)자체평가연구나 협의회의 대학(교)평가위원의 현지방문평가를 수행하는데 실질적인 평가척도(척도)의 역할을 하도록 작성되어 있다. 그리고 각 평가항목에는 A, B, C 등 3가지 형태의 평가지표(평가지침)가 적혀 있다(91~95년 우리나라 대학목표 “최소한 B수준”).

3. 의과대학평가: 발전방향(양적·질적 평가)

의과대학(의학과)교육은 인간의 생명과 생활을 다루는 영역이므로 이를 연구·교육하는 데 있어 다른 분야의 학문에 비하여 월등히 넓은 범위와 깊이를 갖는다. 또한 의학과 졸업생에 대하여서는 일정한 고시를 과한 후에 국가가 의사자격을 인정하고 의료행위를 면허하는 까닭으로 교육량이나 질에 있어 어떤 기준 이상의 수준을 유지할 것이 요청된다. 한편 인류문명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에 따라서 생활양식이 복잡해져가고 인류의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가면서 질병의 양상도 변천해가고 보건·의료 수요의 양적인 팽창과 질적인 향상이 요구되고 의학계 영역에서는 연구업적이 곧 바로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사업의 정착은 국가의 중요한 지표로 되어 있어 그 정책수행을 담당할 인적 자원, 특히 의사양성의 근원이 될 의학과 교육의 중요성이 국내외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도 급증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많은 의과대학(의학과)이 짧은

표 6. 학과평가의 내용과 평가준거 <한국대학교육협의회(1990)>

학과평가내용		평가준거	
대항목	소항목		
1. 학과의 목표	1.1 학과의 목표체계	1.1.1 목표체계의 연계성	
	1.2 학과목표의 내용	1.2.1 학문적 적절성 1.2.2 직업적 적절성	
	1.3 학과목표 설정방법	1.3.1 설정방법의 적절성	
	1.4 학과목표 달성	1.4.1 목표달성의 효과성	
2. 교육과정	2.1 교육과정 개선	2.1.1 교육과정의 주기적 개편 2.1.2 교육과정 개선체계의 적절성	
	2.2 교육과정 구성	2.2.1 목적에 근거한 교육과정의 구성 2.2.2 전공필수 교과목 수의 적절성 2.2.3 선택 교과목 수의 적절성 2.2.4 타 학과개설 교과선택의 가능성	
	2.3 교육내용	2.3.1 교양교육내용의 적절성 2.3.2 전공교육내용의 학문적 요구 충족 2.3.3 전공교육내용의 직업적 요구 충족	
	2.4 수업지도	2.4.1 과목당 수강 인원 수의 적절성 단위 2.4.2 교재의 질적 수준 2.4.3 강의내용의 충실도 2.4.4 교수자료의 다양화	
	2.5 실험교육	2.5.1 이론과 실제의 통합성 2.5.2 실험교육 내용의 적절성 2.5.3 실험교육 방법의 적절성 2.5.4 실험교육 여건의 적절성 2.5.5 실험교육 평가의 적절성	
	2.6 실습교육	2.6.1 실습교육 내용의 적절성 2.6.2 실습교육 방법의 적절성 2.6.3 실습교육 기간의 적절성 2.6.4 실습교육 여건의 적절성 2.6.5 실습교육 평가의 적절성	
	2.7 학습평가	2.7.1 평가내용의 적절성 2.7.2 평가방법의 적절성	
	3. 학생	3.1 학생선발	3.1.1 입학전형의 학문적 독자성 반영 3.1.2 입학전형의 공정성 유지 3.1.3 진과 기회의 적절성 3.1.4 학업능력의 적절성 3.1.5 학생 수의 적절성
		3.2 학생지도	3.2.1 교수·학생 관계의 적절성 3.2.2 취업정보·지도의 적절성 3.2.3 학생개별 정보 기록관리의 적절성 3.2.4 상담지도 방법의 적절성

주)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의 총학장이 회원이 되어 운영하는 기관이며 법률 제3727호(1984. 4. 10)를 근거로 성립됨.

학과평가내용		평 가 준 거
대 항 목	소 항 목	
	3.3 학생자치활동 3.4 학생복지 3.5 학생산출	3.3.1 학생 학술활동 참여 정도 3.3.2 학생 학술활동 질적 수준의 적절성 3.3.3 자치활동의 의사결정 방법의 적절성 3.4.1 학생복지시설의 적절성 3.4.2 장학금 재정확보의 안정성 3.4.3 근로장학제도의 활성화 3.4.4 장학금 배정원칙의 적절성 3.5.1 전공직업에 대한 태도 3.5.2 전공교육에 대한 태도 3.5.3 취업률 3.5.4 진학률
4. 교수	4.1 인사 4.2 교수의 구성 4.3 교수여건 4.4 교수연구 4.5 부설연구소 4.6 교수개발	4.1.1 교수임용 방법의 적절성 4.1.2 교수 신분보장의 적절성 4.1.3 승진제도의 적절성 4.1.4 교수 채용의 계획성 4.2.1 전임교수 확보의 적절성 4.2.2 조교 확보의 적절성 4.2.3 박사학위 소지율의 향상 4.2.4 본교출신 교수비율의 적절성 4.2.5 외래강사 자질의 적절성 4.3.1 교수-학생비율의 적절성 4.3.2 교수의 강의 부담의 적절성 4.3.3 교수 담당과목수의 적절성 4.4.1 연구비 수혜자 증대 4.4.2 논문의 질적 수준 4.4.3 논문 발표량의 적절성 4.4.4 연구비 지원 방법의 적절성 4.5.1 연구소 재원의 안정성 4.5.2 연구과제의 증대 4.5.3 연구비 수혜 증대 4.6.1 국내·외 연수 기회의 적절성 4.6.2 연수경비 지원의 적절성 4.6.3 학술활동 참여의 적극성
5. 시설 및 설비	5.1 시설 5.2 설비	5.1.1 연구실 확보의 적절성 5.1.2 학과전공 도서실 확보의 적절성 5.1.3 강의실 확보의 적절성 5.1.4 세미나실 확보의 적절성 5.1.5 실험실 확보의 적절성 5.2.1 학술자 구독 종류의 다양화 5.2.2 전공도서 확보의 현대화

학과평가내용		평 가 준 거
대 항목	소 항목	
		5.2.3 컴퓨터 확보의 적절성 5.2.4 컴퓨터 활용정도의 적절성 5.2.5 실험기구 확보량의 적절성 5.2.6 실험기구의 현대화 5.2.7 실험기자재 활용의 편리성
6. 경영 및 제정	6.1 의사결정 6.2 기획 6.3 재정확보 6.4 재정운영	6.1.1 학과 교육행위 자율결정권의 적절성 6.1.2 학과 정책 실현의 합리성 6.1.3 학과 교수회의 방법의 적절성 6.2.1 학과장의 전문화 6.2.2 학과 장기발전계획의 수립 여부 6.2.3 학과 장기발전계획 실천의 적절성 6.3.1 학과경비 산출근거의 합리성 6.3.2 학과경비 확보의 안정성 6.3.3 학생등록금의 적절성 6.3.4 학과간 재정배분의 균등성 6.3.5 예산결정과정의 적절성 6.4.1 교수봉급의 적절성 6.4.2 학과운영비 규모의 적절성 6.4.3 사무직원 처우의 적정화 6.4.4 외래강사료의 적정화 6.4.5 초과수당의 적정화 6.4.6 학생 1인당 교육경비의 적절성

기간에 신설인가 되고 학생입학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교육과정이나 교육방법 등에 관하여 재검토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의과대학간의 교육여건의 차이에 따른 질적 차이를 좁히고, 의학과 교육의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나아가 보다 발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의과대학(의학과)이 구비하여야 하는 적절한 교원인력과 보조·행정인력, 의학교육과 실습시설·설비 및 운영 재정여건에 관한 기준이 설정되고 각 의과대학과 의학과가 그 규범과 기준에 도달하도록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의과대학평가·기준표준화사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의과대학 및 의학과평가를 위한 내용과 기준은 앞서 학과평가내용과 평가준거(2-다항)에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의학과 교육의 특성에 합당하게 평가내용과 기준을 선정하고 적절하게 개발된 준거를 기초로 한 평가기준별 평가지침의 설정과 평가표준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의학교육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평가내용과 기준개발은 모든 의학교육자들의 참여와 공동노력으로 개발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의학교육관련기관들(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 한국의학교육학회, 의학회, 대한의학협회, 의학교육연수원, 교육부, 보건사회부 등)의 협의와 지원으로만 이 가능할 것이다(그림 1).

여기에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시한 학과평가내용과 기준을 검토 보완 함에 있어서 고려될 수 있는 의학교육 특성에 관련되는 기준 준거 지침 지표 사항 몇가지를 평가영역별로 예시적으로 열거하고자 한다.

1) 의과대학(의학과) 교육목표의 재정립

각 의과대학과 의과과가 교육여건개선을 위하여 발전하여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은 명확한 교육목표의 정립이다. 교육목표가 명확하여야 교육내용(교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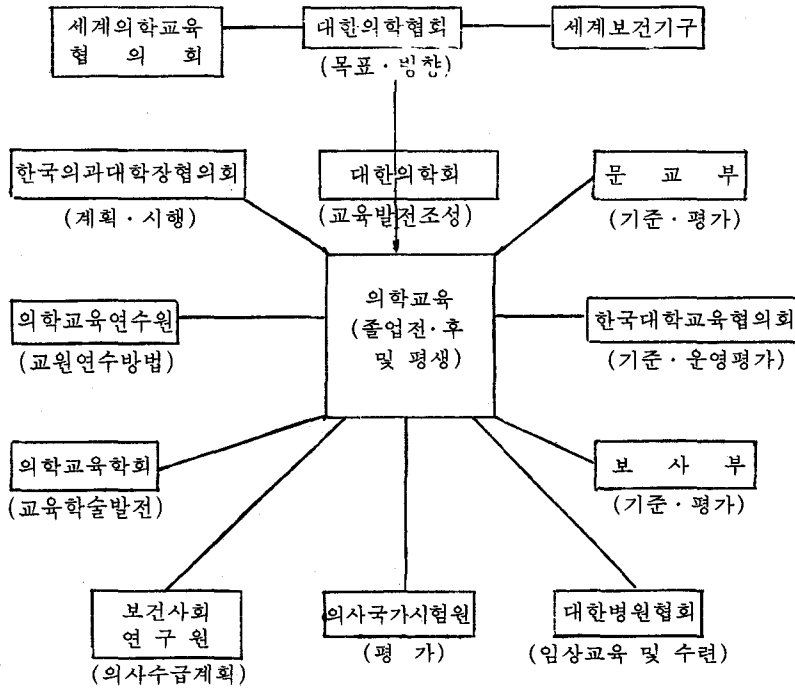


그림 1. 한국의학교육 관련기관과 주기능

교수요목 등)과 수준 범위를 결정할 수 있고, 따라서 교수·학습기능을 수행할 교원인력, 조교인력을 판단할 수 있고 교육시설, 실습시설 및 설비의 종류와 확보 수량기준을 산정할 수 있고 현황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은 의과대학의 교원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는 학부교육과 대학원교육, 전공의 수련교육 및 졸업후 의사연수교육 등 증부교육으로 야기되는 학생교육 피해를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의과대학 및 의학과 교육목표는 일정 기간을 두고 주기적으로 검토되고 필요한 보완적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의과대학(의학과) 교원 및 직원 인력여건 개선사항

각 대학교와 의과대학 책임자는 대학설치령에서 규제한 교원 및 조교배정기준에 근거한 의학과 교원 확보를 기하고, 조교 양성을 통한 의과대학 교원 후보

자 양성계획을 발전시켜야 한다.

의과대학 및 의과학교육에 있어서 교육·학습기능을 기하기 위한 교원·조교 및 교육행정직원의 인력여건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다.

(1) 교육목적 및 교육과정과 관련되는 사항 :

- ① 의과대학, 의학과 및 학과목별 교육목적과 목표 설정
- ② 교양과 전공교과목 수와 학점의 적정배정 및 전공필수와 전공선택과목 수와 학점의 적정배정
- ③ 수강학생 수의 결정(강의·실습·세미나 등)

(2) 교수자질향상과 관련되는 사항 :

- ① 개설교과목의 엄선과 적정수 전임교원 확보
- ② 교원인력의 직급별 분포균형 유지(교수·부교수 대 조교수·전임강사수)
- ③ 교원대 학생수의 적정유지(기초분야·임상분야)
- ④ 교원대 조교 및 각종 교수행정직원의 적정 유지
- ⑤ 교원연수기획 확대(교과운영·교수방법·교재개

발·평가방법 등)

- ⑥ 비의학과 출신 교원연수기회 확대(의학과교육 특성 등)
- ⑦ 시간강사 의존을 감소
- ⑧ 외래교수 및 임상전임의사(Fellow) 활용방안 강구

(3) 학생의 자질향상과 관련되는 사항 :

- ① 입학생의 질(인성·지성·건강도·사회성 등)
- ② 입학 후 학생탈락의 감소를 위한 교육적 노력 (학점제·과목선택제·계절학기 개설 등)
- ③ 학생학술활동지도 확대
- ④ 학생회 및 씨클활동지도 확대

3) 의과대학(의학과) 교육시설·설비기준 설정운용 사항

의과대학 및 의학과 교육책임자(학장 및 학과장)은 교육목표 구현을 위한 교육시설과 설비목표를 수립(교육시설계획)하고 기준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발전을 수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교육시설·설비기준 개발은 교육부뿐만 아니라 의과대학장협의회, 의학협회, 의학교육학회 등의 공동연구발전 과제이기도 하다.

의과대학 및 의학과 교육을 기하기 위한 시설·설비 여건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건물시설 확보와 관련되는 사항 :

- ① 교수연구실
- ② 세미나실
- ③ 강의실(부대설비) 및 강당(부대설비)
- ④ 학생실험실습실 및 부대시설
- ⑤ 학생임상실습시설(병원) 확보
 - 1차의료시설(지역사회·결연시설)
 - 2차의료시설(부속시설·결연시설)
 - 3차의료시설(부속시설·결연시설)
- ⑥ 각 시설에 있어서 실습학생당 병상 수의 하한선과 상한선 및 부속병원 및 결연시설수의 하한선과 상한선 규제
- ⑦ 학생임상실습시설(부속병원)에 있어서의 학생교육을 위한 강의실·세미나실·환자에진실·학생대기실 등 배치

- ⑧ 지역사회 현저보건·의료실습장시설 확보(군보건서·면보건지소 등) 활용
- 의과대학 의학과 학생임상실습을 강화하여 졸업 후 지역사회에서 1차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의과대학(의학과) 시설 설비기준의 부속병원 항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제하여 부속병원 외에도 1차 및 2차의료시설과 군·면 단위 지역사회에서 현지 임상실습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 ⑥ 도서관 시설
- ⑦ 시청각기자재자료실
- ⑧ 학생회 시설 및 복지 시설(씨클 룸, 휴게실, 매점, 식당, 기숙사 등)
- ⑨ 대학교육 및 학과교육 행정시설

(2) 학생실습교육과 관련되는 사항 :

- ① 학생실습의 교육목표(교과목별) 설정
- ② 학생실습의 종류 내용과 기준(교과목별) 설정
- ③ 학생실험실습 대상수(분반별)(교과목별)
- ④ 교수·학습방법(교수시범·오목과 학생실습시행요목 등)
- ⑤ 학생임상실습에 전공의 및 전임의사(Fellow) 활용
- ⑥ 위 관련 사항의 종합검토 결과로서의 실습·설비(장비·기구·기기·소모품 등) 종류와 수량 선정 및 확보
- ⑦ 실습·설비설치 및 건물·시설관리능력
- ⑧ 시설·설비 운용을 위한 기술요원 확보
- ⑨ 교수합동연구소 시설·설비 및 운영능력

4) 의과대학 의학과 교육을 위한 재정여건
의학교육을 위한 행정운영체제와 재정에 관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의료원 기구운영 효율화
- 2) 의과대학발전 장·단기계획수립 및 시행
- 3) 대학·학과·교실의 적정 교육경비 산정과 지원
- 4) 학생장학금 증대(특히 대여장학금제 개발)
- 5) 교직원 적정 급여
- 6) 교수연구비 지원(기금조성 등)